운영위원회규정

운영위원회규정

전부개정 2007. 7. 12
일부개정 2010. 2. 11
일부개정 2016. 3. 29
일부개정 2018.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라 함은 원장 직속기구의 운영위원회와 부설기관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6. 3. 29.>

제2조(설치) 정관 제29조에 따라 원장직속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원구성과 위원장은 정관 제2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11.><일부개정 2016. 3. 29.>

제3조(위원구성 등) 정관 제29조에 따라 원장 직속위원회 위원과 부설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신설 2010. 2. 11.><일부개정 2016. 3. 29.>

제4조(위원의 임기) 원장 직속기구의 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 반수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6. 3. 29.>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조번호변경 2010. 2. 11.>

제6조(기능) ① 원장 직속기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인의 주요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인 사업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규정·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0. 2. 11>

② <신설 2010. 2. 11><삭제 2016. 3. 29.>

1. <삭제 2016. 3. 29.>
2. <삭제 2016. 3. 29.>
3. <삭제 2016. 3. 29.>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원장 직속기구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정책기획단장이 대행한다.<일부개정 2010. 2. 11., 2016. 3. 29.>

③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6. 3. 29.>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안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번호변경 2010. 2. 11>

제9조(운영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당해 직속부서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소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직속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6. 3. 29.>

③ 운영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공통운영요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한 세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기획 및 평가업무의 정보교류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부에서 지원한 세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0. 2. 11.>

④ 운영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특별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소관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번호변경 2010. 2. 11.>

제11조(간사) ① 원장 직속기구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장이 별도 정한.<일부개정 2010. 2. 11., 2016. 3. 29., 2018. 12. 19.>

② 원장 직속기구 및 부설기관 운영위원회 간사는 업무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0. 2. 11.>

③ 의안 설명은 간사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녹취한 바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참석위원 3명 이상의 날인을 받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녹취 결과물과 함께보존하여야 한다. <조번호변경 2010. 2. 11.>

제13조(수당 등)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번호변경 2010. 2. 11.>

부 칙<200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시행일과 같이 한다.

부 칙<201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